

의안번호	제203호
의결연월일	2020. 4. 1.

-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3. 27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: 2020. 3. 27. 산업건설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20. 4. 1.

제258회 예산군의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경제과장: 박문수)

가. 제안이유

- 감염병 등의 재해·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해·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(안 제4조2)
-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(안 제4조3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이용수)

- 「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조례안」은 감염병 등 재해 및 재난 상황 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